



진주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조감도

목 차

<p>■ 건설관련 소식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 건전화 시책 일환으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시 턴키방식 중단" 결정 - 경남도,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 경남도, 바닷모래 판매(사용)업체 합동점검 시행 - 경남도, 자연재해 대비 매뉴얼 골든타임제 운영으로 초기 대응능력 향상 - 경남도, 배수개선사업 신규 대상지구 5곳 확정 - 저소득 도민의 주택을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 - 경남도, 2014년도 신규 산업단지 8곳 추가 지정 - 창원시, 현동~월영동간 도로 개통 - 왕복4차선 개설, 입체교차로 설치 - 동네 골목상권 물류비용 절감 등 경쟁력 증대 - 기존도로 일부 노선변경 주의, 신설도로 감속운행 등 운전자 주의 - 공단교(가칭) 착공 본격화 - 양산시 하천 생태계 복원사업 역점 추진 - 9월까지 설계 마무리, 총사업비 80억 원 투입, 10월부터 공사 본격화 - 하동군, 읍내 경서대로 옛 교육청 리모델링 20일 개관 	<p>■ 지식정보 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도, 폭염 피해 대비 종합대책 추진 - 마창대교 MRG 공익처분으로 재구조화 - 경남도,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5% 설정 - 경남도-KRRI와, 미래철도기술개발 미래성장 동력 함께 만든다. - 2014년 경남 지역특화산업 지원계획 공고 -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 - 삼성물산·금호산업·금성백조주택, 원·하도급 상호협력 돈보여 - 건설산업 비정상적 관행 개선 속도 높인다 - 효과 검증된 회전교차로, 내년부터 일반국도로 확대 - 물 부족 섬마을, 지하수 확보 가능해진다 - 국토부, 전국 PEB구조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 종합심사낙찰제, 최초 시범사업 발주 <p>■ 배워서 남주 者 25</p> <p>■ 입법예고 및 법령해석 31</p> <p>■ 신기술 정보 36</p> <p>■ 건설기술심의 현황 37</p> <p>■ 계약심사 현황, 기술인 나눔 정보 38</p>
---	--

지방재정 건전화 시책 일환으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시 턴키방식 중단” 결정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추진 중인 지방재정 건전화 시책에 따라 그동안 발주청의 요청에 의거 입찰방법 심의 시에 관행적으로 적용하여 온 대형공사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입찰방법 심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대형공사 턴키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 계약하는 방식으로 70년대 중동진출을 계기로 건설기술력 제고를 위해 지난 75년부터 국내 도입되어 300억 원 이상 기술력이 중시되는 복합공종공사, 공기단축을 요하는 공사에 적용해 왔으나, 최근 4대강사업, 인천도시철도공사 등에서 턴키 입찰시 담합으로 인한 비리와 높은 비율의 낙찰율로 인한 예산낭비 등 사회적 물의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개선대책 마련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경남도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도 관련부서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물론 시·군 발주 대형건설공사에 대해서도 턴키방식 입찰방법 심의를 중단 결정함으로써 턴키입찰로 예상되는 입찰담합 비리와 예산낭비 요인을 원천 차단하고 부패방지과 지방재정 건전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설계비 등 선투자 부담완화 및 공동도급 확대 등 도내 업체의 참여기회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시·군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턴키방식 대형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대안입찰 방식 또는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추되 최저가

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을 제한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경남도 박우식 건설방재국장은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있어 심의위원 로비 등 각종 비리 근절을 위해 시민참관, 회의록 공개 등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아울러 국토부 및 타 시·도 수범사례를 참고하여 운영함으로써 투명성확보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팀당
(055)211-4622

경남도,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5월 23일자로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 용역업이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 된다.

경남도는 향후 1년 이내에 건설부분 엔지니어링사업자 176개사, 감리전문회사 40개사, 품질시험기관 11개사 등 약 227개사 용역업체가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초 도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40개사의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민원사무 및 행정처분을 이행하였으나, 법령개정에 따라 5배가 넘는 건설기술용역업에 대한 사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경남도는 5월 23일 법령의 시행에 맞추어 민원사무에 대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지정·고시하였다.

위탁업무 수행기관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는 기존 한국건설감리협회와 한국설계협회가 통합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업에 대한 위탁사무 또한 이행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1년의 유예기간(2015. 5. 22.한)이 경과되면 기존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설계용역 입찰참여가 불가한 만큼 기한 내 등록요건을 갖추어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에 관한 절차나 등록기준, 민원서식 등은 ‘경상남도 건설정보 홈페이지(<http://gnci.gsnd.net>)’ 건설면허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팀장
(055)211-4626



경남도, 바닷모래 판매[사용]업체 합동점검 시행

경남도는 최근 언론 제기된 바 있는 바닷모래 세척수 무단방출과 염분함유량 초과 모래공급 방지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지난 5월27일부터 5월29일까지 3일에 걸쳐 한국골재협회 · 해당시 관계자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은 창원·통영·사천·거제시로 4개시 17개 사업장에 대해 염분함유량, 폐수배출시설 설치 유무, 등록업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세부점검이 이루어졌다.

점검결과 염분함유량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구경북지

원에 품질시험을 의뢰하였고, 폐수배출시설 신고·인가와 골재채취업 등록은 17개사 모두 완료되었으나, 통영시 00산업 외 5개사는 선별·세척업 신고를 미필하여 추후 해당 시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제염시설은 모두 설치 운영되고 있었으나 특별한 시설기준이 없어 대부분 재래시설이었으며, 염분함유량 측정 및 기록일지 작성소홀, 자료 보관기간 업체별 상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경남도는 금번 점검을 통해 제염시설의 기준마련 및 현대화의 필요성,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완화 등의 건의사항은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허가등록기준 이행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당 시에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바닷모래 공급업체를 관리 해 나갈 계획이다.



■ 자료 : 도 치수방재과 하천관리팀장
(055)211-3944



경남도, 자연재해 대비 매뉴얼 골든타임제 운영으로 초기 대응능력 향상

▶ 경상남도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매뉴얼에 대한 골든 타임제 운영

경상남도는 지진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대하여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대응 매뉴얼에 대하여 전국 최초로 골든타임제를 적용, 시행하고 있다.

먼저 지진 대응 매뉴얼을 살펴보면 최초 지진발생시 기상청의 지진계에서 관측되는 지진발생정보를 접수, 상황전파 및 초기대응지시와 함께 근무자를 비상소집하는 것이 첫 번째 정보접수 단계로 설정되어 있으며,

두 번째 단계인 초기대응 단계는 소방과 군경 출동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하며 초기사상자 구호와 이재민 수용 등의 역할 수행 등을 위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재난발생사실을 도민에게 홍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져 있다.

태풍 대응 매뉴얼은 기상청의 일기예보·특보 등 기상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기상 자료를 분석·판단하여 태풍 내습에 따른 상황전파, 비상근무(도 및 시·군, 유관기관) 등 본부 운영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상황관리 단계로 설정되어 있으며,

두 번째 단계인 초기대응 단계는 피해접수에 따른 유관기관, 군부대, 경찰, 소방 출동으로 피해지역 교통통제 및 인명구조·구호 활동 조치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응급복구 추진하고, 피해상황 및 재해구호활동 등에 대한 언론 브리핑·홍보가 계획 되어져 있다.

전체 매뉴얼은 각 단계별로 근무자의 명단과 함께 상세 임무까지 부여되어 있으며 대응 시간을 설정하여 최초 정보 접수 단계에서 재난발생 사실 홍보단계까지 총90분으로 불필요한 대응절차를 간소화 하여 가장 핵심적인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 자료 : 도 치수방재과 복구지원담당 (055)211-4196



경남도, 배수개선사업 신규 대상지구 5곳 확정

▶ 신규착수 2개 지구, 기본조사 3개 지구 확정, 국비 500억 원 확보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배수개선사업에 신규착수 2개 지구와 기본조사 3개 지구 등 도내 5개 지구가 확정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년 우기 시 되풀이 되는 해당지역 농경지의 상습 침수피해 방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신규착수 지구로 확정된 사천시 곤명면 완사지구와 함안군 가야읍 산서지구는 올해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내년부터 약 3년에 걸쳐 국비 200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기본조사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기본조사를 실시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착수 지구로 지정될 예정으로, 향후 국비 약 300억 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남도의 배수개선 대상지 대부분이 매년 여름철 집중 호우 때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남강과 낙동강변의 저지대인

점과 해당 지역에 특수작물 시설하우스가 많아 침수피해가 매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관계 공무원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집중 부각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경남도 문맹길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여름철 상습 침수피해 지역인 저지대 농경지에 빠른 시일 내에 배수개선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에도 계속사업지구 12개 지구에 대해 우수기 이전 배수장 가동을 목표로 국비 357억 원을 투입,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자료 : 도 농업정책과 농촌개발담당 (055)211-3643



저소득 도민의 주택을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

▶ 「도민 행복주택」 올해도 3가정 사업 추진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조손가정, 편부부가정,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 계층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도민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여, 올해도 도내 3가정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10년간 30가정에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창원, 진주, 김해시 3가정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도민 행복주택사업」은 경상남도가 지원 희망 주택업체 등의 희망신청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수혜가정 추천을 받아, 업체가 희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주택건설업체 등은 가정당 3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리모델링 사업 등을 직접 시행하며, LH공사는 3백만원의 물품기증 및 자녀들의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도와 시·군 건축직 공무원들도 휴일 이삿짐 운반 등 자원봉사에 동참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창원 소재 (주)덕진종합건설, (주)한림건설과 서울 소재 (주)태영건설이 참여한 바 있으며, 2014년에는 주택건설업체인 창원소재 (주)덕진종합건설, (주)덕산종합건설, 그리고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 중인 (주)마루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가 각각 사업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 자료 : 도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055)211-4413



경남도, 2014년도 신규 산업단지 8곳 추가 지정

▶ 올해 전체 27지구(731만㎡)산업단지 신규 공급, 전국 최다

경남도는 제조업 경기가 조금씩 되살아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단초가 되는 산업용지 적기 공급을 위해 올해 새로이 8개 단지 141만 8천㎡의 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21개 산업단지(면적 625만 8천 m²)를 신규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그 동안 사업추진이 부진한 2개 산업단지(36만 5천 m²) 예정지를 제외시키고, 새로이 8개 산업단지(141만 8천 m²)를 국토교통부와 사전 조정 협의를 거쳐 신규로 공급한다.

이번에 추가로 신규 지정하는 8개 단지는 산업단지 입지여건, 입주 수요, 자원조달계획,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등의 심사를 강화해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100% 실제 입주하는 실수요 개발방식이면서 연내 착공이 확실한 산업단지만을 선정했다.

이로써 올해 신규로 공급되는 산업단지는 전국 84개 단지의 32%에 해당하는 27개 지구로 전국 최다이다.

경남도는 새로이 개발되는 산업단지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반 마련과 기업의 투자 여건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경남도의 산업단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된 사유는 최근 제조업 경기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도내 기업을 비롯한 인근 부산·울산·대구 등의 지역 기업들이 사업 확장 과철도·도로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경남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이전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경남도는 추가 지정계획에 반영된 지구에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해 승인 신청을 하면, 관련법에 따라 각종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산업용지 적기 공급으로 고용창출 극대화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개발되는 산업단지는 융·복합 개념을 도입하여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산업공간’으로 조성해, 청년고용을 더욱 높이고 단지 조성 계획단계에서부터 친환경 산업단지가 조성 되도록 ‘빗물활용 생태습지형 저류지’를 설치하는 등 새로운 개념의 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자료 : 도 도시계획과 산업단지계획담당 (055)211-4344



창원시, 현동~월영동간 도로 개통

▶ 마산합포구 도심 관문인 밤밭고개 교통체증 해소

마산합포구 현동에서 월영동을 잇는 도로(대로3-10호선)가 5월 1일 개통했다.

이 도로는 옛 현동검문소에서 월영동 부영아파트 신축부지까지 청량산터널 272m를 포함하여 총연장 1360m, 폭 25m의 4차선 도로를 사업비 268억원을 들여 지난 2008년 사업을 추진한 지 6년 만에 개통했다.

이에 따라 마산합포구 도심 관문이자 상습정체구간인 밤밭고개를 경유하지 않고 현동에서 월영동으로 직접 통행이 가능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현동에서 해안도로까지 차량 운행시간이 7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5년 1월부터 단계별 입주계획으로 추진 중인 ‘창원현동 보금자리주택지구(6,160호)’ 조성예 맞춰 도로가 개설되므로 대규모 개발과 늘어나는 인구에 의한 도심지 교통체증을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석기 시장 권한대행은 “상습정체 구간인 밤밭고개를 경유하지 않는 새로운 도로개설로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뿐 아

나라 신마산 도심권의 개발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석기 시장 권한대행은 인근 덕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와 시립테니스장을 차례로 방문해 시민들과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 자료 : 창원시 건설도로과 (055)225-4544

왕복4차선 개설, 입체교차로 설치

경남 진주혁신도시 기반시설의 마무리와 함께 혁신도시의 접근성 확보와 교통량 분산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혁신도시와 국도2호선간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 공사가 본격 추진된다.

2016년 말까지 총 사업비 244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문산을 옥산리 국도와 충무공동 혁신도시와 직접 연결하는 1,130m, 구간으로 폭 25m의 왕복 4차선 도로 개설과 입체식 교차로를 설치하는 공사다.

진주시는 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이 진행중에 있으며, 확장개설 사업은 내달말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올 완공예정으로 있는 혁신도시의 원활한 진출입도로 확보와 차량의 분산으로 인접 기존도로의 교통 개선과 함께 진주지역 전체 외곽을 순환하는 도로망이 갖춰진다.

특히 시는 이 공사의 조기 착공과 함께 국비 80억 원을 지원받아 시 예산 80억원을 절약 하였으며,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는 물론 물류비용 절감 등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혁신도시와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가 확장개설 되면 기존도로 개선과 창원, 사천, 남해 등 외곽에서 진출입이 한결 편리해지고 복잡한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도 원하는 목적지에 신속하게 갈 수 있어 접근성이 대폭 개선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진주시 공공기관이전지원과 (055)749-5983

동네 골목상권 물류비용 절감 등 경쟁력 증대

서부경남권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진주시는 지역 중소상인들의 유통비용 경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진주시 정촌 일반산업단지내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공사를 5월말 착공한다고 밝혔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슈퍼마켓 및 영세점포 등 서부경남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이 공동구매와 공동배송 등 유통단계를 축소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전문적인 판매관리시스템을 구축,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진주시에 건립되는 물류센터는 12,050㎡의 부지에 지상 2층, 건축연면적 4,000㎡ 규모로 국비 42억원 등 총 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5월말 공사를 착수해서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다.



진주시를 비롯한 서부경남 8개 시군의 슈퍼마켓을 비롯한 영세점포의 물류를 책임질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가 건립되면 현재의 생산자→영업본부→영업소→도매점→소매점 등 5단계 유통체계가 생산자→도매물류센터→소매점 등 3단계로 축소되어 슈퍼마켓과 같은 소매점에서는 기존에 비해 10~30%의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 “공동도매물류센터를 통한 유통물류 현대화를 계기로 동네 슈퍼마켓이 가격과 품질면에서 대형 유통업체와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침체된 골목상권의 기능을 회복시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 : 진주시 산단조성지원과
(055)749-5434

기존도로 일부 노선변경 주의, 신설도로 감속운행 등 운전자 주의

사곡~거제간 도로 4차로 확·포장 공사가 오는 6월 20일 개통된다.

사곡~거제간 도로는 연장 1.95km(터널185m) 폭18.5m(4차로)에 총사업비 440억 원을 투입, 2009년 7월부터 2014년 7월 22일 준공을 목표로 했다.

이에 거제시는 여름 관광성수기를 맞아 당초 계획보다 1개월 빠르게 도로를 임시 개통해 지역주민과 거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이 도로는 4개 차로로 거제면에서 사곡방향은 내리막길이어서 차량의 과속운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된다. 특히 국도14호선과 접

속되는 사곡램프 구간은 교통안전시설 안내에 따라 규정 준수와 감속운행 등 운전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이 도로가 개통되면 현행 도로는 두동고개를 지나 사랑의집 입구에서 차단되므로 두동마을 및 영진자이온아파트에서 거제면 방향 운행 시 기존도로→옥산고개→옥산마을→거제면방향 도로를 이용하던지 기존도로→건설중인 도시계획도로(영진자이온아파트앞)→신설도로(4차로)→거제면방향 도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도로는 2014년 6월 20일 개통과 더불어 주변 현장정리 와 마무리 작업을 거쳐 오는 7월 22일 전체 완전 준공할 계획이다.



■ 자료 : 거제시 문화공보과 (055)639-3384



공단교(가칭) 착공 본격화

▶ 울곡농공단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폭제 역할

합천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금양~대양 공단교(가칭) 건설공사 시행사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개찰결과 (주)성도토건이 투찰률 81.596%, 입찰금액 116억 3천 686만 6천원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군민들의 오랜 염원인 공단교 건설공사는 총연장 1.14km 중 교량 438m와 접속도로 702m로 구성되며, 지난달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공단교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국도 33호선 합천교차로에서 합천·대구·진주·창녕의 4방향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며, 공단교를 이용하는 동부 6개면의 통행 거리는 3km, 통행시간은 7분정도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울곡면 임북리 791,000㎡의 부지에 약 570억원의 투자로 2017년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는 울곡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부자 합천을 실현하는 새로운 토대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합천군 관계자는 “공단교가 완공되면 지역주민과 합천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교통편의 제공, 물류비 절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료 : 합천군



양산시 하천 생태계 복원사업 역점 추진

양산시가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고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의 영향 등으로 상실된 하천을 자연친화적이고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여가·휴식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한 사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양산시에 따르면, 현재 하천 환경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주요 하천은 웅상의 회야강, 양산천 지류인 북부천과 대석천, 원동 당곡천 등이다.

회야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평산동 평산교~용당동 당촌교간 4.7km 구간의 하천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으며, 오는 2016년 2월 준공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강의 호안 정비와 함께 가동보를 설치하고 비오톱(생물군집서식공간), 생태공원 및 하천숲,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한다. 사업비는 국비 110억을 포함해 모두 15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북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동원과기대 앞에서 양산천 합류부간 4.6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 70억 등 모두 100억 원을 투입해 호안정비와 함께 어도와 생태여울,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할 예정으로 지난해 3월 착공했다. 준공은 2016년 12월로 계획돼 있다.

시는 특히 북부천의 건천화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건천화 지속구간의 바닥을 친환경적인 점토로 바꿔 하천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적인 생물 서식여건을 갖출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삼신교 및 LPG충전소에서 한성아파트간 200m 구간을 우선 시범구간으로 선정해 시공 후 세 계절 동안 모니터링해 유량 확보가 확인될 시 잔여구간(1km)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북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대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상북면 대석리 일원 2km 구간의 하천을 오는 2016년 12월까지 국비 60억 등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호안을 정비하고 생태학습장 등을 갖춘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9월 착공됐다.

원동면 용당리 일원에 걸쳐 있는 당곡천의 하천정비는 국토교통부의 지방 하천정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생명의 강을 조성한다는 것으로 당곡천 3.3km 구간을 생태기능 향상과 오염방지 등을 위해 자연 친화적으로 정비하고 주민의 친수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수변공원을 조성해 주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생태습지 탐방데크 등도 설치해 관광·휴양지 기능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2018년 완공예정이며, 국비 148억 등 모두 24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는 이에 앞서 유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국비 104억 등 총 148억을 들여 지난 2013년 완공, 어곡동에서 유산동 양산천 합류부까지 4.3km 구간의 유산천 환경을 친자연형으로 정비하기도 했다.

이밖에 시는 웅상 삼호동 일원 회야강~명곡천 합류간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나무를 심는 등의 명곡지구 하천환경 조성사업을 올 연말 완공예정인 공사 중이며,

원동 선장천, 상북석계천, 하북 통도천, 웅상 평산천 등에 대한 소하천 정비사업도 진행 중이다. 또 관내 54개 소하천에 대한 정비종합계획용역을 하고있는 등 지역 하천정비사업을 적극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하천을 자연 친화형으로 탈바꿈시켜 하천의 생태와 기능을 복원하고 주민을 위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친수공간도 조성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하천으로 거듭나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기능도 강화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 자료 : 양산시 건설방재과 (055)392-2821



9월까지 설계 마무리, 총사업비 80억 원 투입, 10월부터 공사 본격화

사천시는 국도3호선 송포교차로 상습 병목지점 개선과 삼천포항 진출입로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9일 거창군 소재 (주)서화기술공사와 계약체결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다.

올해 9월말 설계완료를 목표로 용역비 2억 원을 투입하는 이 용역에는 삼천포항 진,출입시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감차로를 연장하고, 특히 램프 구간 선형을 최대한 직선화하여 삼천포항 물류수송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교량을 획기적으로 개선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차로 개선사업에 80억원정도 소요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그 동안 도로유지관리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약하여 국비 50억원이 확보되었으며, 부족한 사업비는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 할 계획이며, 본 공사는 오는 10월 착공하여 2015년 12월 말까지 완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시설계용역시 전문가의 자문위원회 구성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설계에 반영하여 상습병목지점 개선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국도3호선에서 삼천포항 진출입 구간에 상습정체해소와 병목지점구간이 크게 개선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산업물동량 수송에 원활을 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사천시 기획감사담당관실 (055)831-2215



하동군, 읍내 경서대로 옛 교육청 리모델링 20일 개관...장서 6만 6149권

하동군민의 숙원이었던 하동도서관이 읍내 옛 하동교육지원청 자리로 새롭게 이전 개관한다.

하동군은 하동읍 경서대로 80 옛 하동교육지원청 건물을 하동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해 20일 개관한다고 19일 밝혔다



하동도서관은 읍내리 하동성당 인근의 옛 교육청 건물을 개조해 1986년 10월 개관했으나 건물이 낙후하고 장소가 비좁아 도서관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하동군과 하동교육지원청은 하동도서관을 옛 교육지원청 자리로 옮기기로 하고 군비 10억원·도교육청 예산 12억 3000만원 등 22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7월부터 건물 리모델링에 착수해 이번에 개관하게 됐다.

이전 개관하는 하동도서관은 4844㎡(약 1465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754㎡(약 530평) 규모로 지하 1층에는 다목적실과 창고 등이 배치되고, 지상 1층에는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관리실 등이 갖춰졌다.

또 지상 2층에는 성인·청소년 열람실을 비롯해 디지털정보실, 강좌실, 휴게실, 서버실, 관장실, 행정실 등이 들어서고, 지상 3층에는 시청각실과 다목적실이 설치된다.

그리고 도서관에는 총류·철학·종교·사회과학·자연과학·기술과학·예술·언어·문학·역사 등 각종 장서 6만 6149권과 e-Book·DVD·VOD 콘텐츠·오디오북 등 소장자료 3149개를 보유하고 있다.

도서관은 이날 개관과 함께 열람실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월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개방하고, 자료실은 화요일~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일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문을 열고 월요일은 휴관한다.

도서관은 군민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일반 군민은 물론 학생·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회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인근 광양시다압면 거주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도서관이 비좁고 오래돼 새 도서관을 마련하는 것이 군민들의 숙원이었는데 이번 새로 이전한 곳은 공간도 넓고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불편을 덜게 됐다”며 “학생과 군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서관 개관일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화려한 행사 없이 참가자들에게 기념 떡과 녹차, 독서가방 등을 나눠주는 조촐한 개관식을 열 계획이다.

■ 자료 : 하동군 기획감사실
(055)880-2043

경남도, 폭염 피해 대비 종합대책 추진

▶ TF팀 구성·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경남도는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여름철 평균기온의 상승추세에 의한 폭염 일수의 빈도와 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민들의 폭염피해 예방 및 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름철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폭염에 대응해 인명피해 등의 최소화를 목표로,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 및 대응체계를 구축,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 본격적인 폭염대응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오는 9월말까지 상황관리반과 건강관리지원반으로 합동 T/F팀을 운영하고 소방방재청 및 기상청 등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기상변화에 따른 상황을 시·군에 전파해 폭염대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노인복지관, 경로당, 마을회관,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종교시설 등 4,241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폭염취약계층인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자 등을 위해 노인돌보미·간호사·사회복지사 등 8,453명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해 폭염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한, 가장 무더운 오후 시간대(14:00~17:00)에는 건설현장, 농사일, 체육활동을 비롯한 각종행사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할 것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도 운영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폭염발생 시 그에 따른 행동요령을 따르는 등 무엇보다 개개인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낮에 야외작업이나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과 만일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로 즉시 연락해 신속하게 구조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농가에서는 가축 및 농작물관리를 위해 축사 단열재부착, 차양설치, 창문 개방, 환기실시 등을 실시할 것과 양식어장에서는 환수량을 최대한 늘리고, 사육밀도 하향 조정해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의 폭염예방에도 적극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자료 : 도 치수방재과 재해대책담당
(055)211-4185



마창대교 MRG 공익처분으로 재구조화

▶ 전국 최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공익처분 시행

경남도는 마창대교 운영사업자 (주)마창대교에 대해 사업자 지정취소를 위한 '공익처분'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마창대교의 실제 교통량이 실시협약상의 계획 교통량 대비 현저하게 차이가 나 (주)마창대교의 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 투융자회사 및 다비하나에 대한 도민의 혈세 지급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폭리구조를 더 이상은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마창대교 당초 MRG 협약은 IMF시절 폭리구조에서 추진되었으며, 2010년 11월 사업시행자의 의도에 이끌려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대로 자금 재조달이 확정되어 현재까지 부당한 폭리 구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거가대로의 경우 2013년 11월 MRG에서 SCS로 재구조화를 통해 5조 7천억 원의 재정절감을 도출한 반면, 마창대교는 MRG방식 그대로 자금재조달을 함으로써 300억 원의 재정절감에 그쳤다.

그러나 실상 300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도 당시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한다면 거의 제로 수준일 수밖에 없다.

이제는 마창대교의 부당한 폭리구조를 허물기 위한 최종수단으로 공익처분이라는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 분	마창대교 자금재조달 ("10. 11. 26.)	거가대로 재구조화 ("13. 11. 11.)
재정지원방식	최소운영수입보장 (MRG)→MRG	MRG→SCS(비용보전방식)
운 영 기 간	2008.7.~2038.7.(30년) (MRG 30년)	2011.1.~2050.12.(40년) (MRG 2년9월, SCS 37년3월)
통행료조정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 인상 - 미인상시 차액 보전	주무관청 결정
수 익 보 장	사업수익률 12.50%	금리 4.72%
재정 보전금	약 6,300억원 보전 (요금에 따라 변동)	약 2,418억 정도 환수 (요금에 따라 변동)
재정 절감액	300억(연10억)	5조 7,000억 (연1,540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기반시설의 중지, 변경, 이전,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경상남도는 공익을 위해 (주)마창대교의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려는 것이다.

마창대교는 1999년 현대건설이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여 2004년 4월 착공, 2008년 6월 준공되어 2008년 7월부터 유료도로로 개통

개통되었다. 개통 이후 경남도가 현재까지 마창대교에 지급한 MRG(최소운영수입보장)는 545억 원에 이르며, 앞으로도 도로이용자가 통행료 2,500원을 내면서도 경남도가 매년 150~260억 원, 24년간 총 6,300억 원을 지급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당초 실시협약상 MRG는 80%로 지난 2010년 11월 자금재조달시 75.78%로 인하 하였으나, 사업수익률이 불변 8.857%(현 경상가 12.5% 정도)로 30년 동안 고정되어 있고, 과다 예측된 통행량이 조정되지 않는 이상 MRG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남도는 지난 2013년 4월 법률, 금융, 회계, 공무원 등 9명의 T/F팀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자와 현재까지 11차례에 걸쳐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재구조화 협상을 벌여 왔으나, 사업시행자는 2010년 11월 변경실시협약을 근거로 재협상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은 불가하다며, 거가대로와 같은 재구조화 방식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현재 3%대의 저금리 금융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전국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유발하며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공익처분이 필요한 시점이며, 올해 KDI 적정성 검토 용역을 통해 마창대교의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유·불리를 정확히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통해 불합리한 민자사업의 현 체계를 바로 잡을 계획이다.

경남도는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자의 반발, 공익처분의 전례가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해 공익처분의 어려움은 충분히 예상되는 바이나, 작년 사상 최대의 재정절감을 통한 거가대로 재구조화 성공과 같이 마창대교 또한 전국 최초의 공익처분을 통해 경상남도가 민자사업 재구조화에 선도적인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재정점검단 민자지원담당
(055)211-2922



경남도,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5% 설정

▶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발전전략 수립, '미래기술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신성장 거점 구축' 비전 제시

경남도가 경남의 미래 50년 신성장동력산업을 주도할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경남도는 20일 오후 2시 도청 소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발전전략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에 나섰다.

이번 용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전망, 국내 정책, 타 지자체 사례 분석을 통한 경남의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 전략과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연구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그 동안 경남도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여건 분석을 통해 다양한 산업육성계획을 수립했으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이를 전면 재검토해 창조경제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실천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이에 도는 '미래기술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신성장 거점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2030년까지 풍력, 태양에너지, 바이오,

연료전지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목표를 15%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미래기술의 활용', '정부정책과 부합하는 패키지 사업추진', '신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의 4대 추진전략도 수립했다.

'선택과 집중'은 기계, 조선 등의 산업인프라와 남해안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고, '미래기술의 활용'은 나노안테나를 이용한 태양전지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 나노안테나(nanoantenna) : 모든 파장대의 빛을 받아들인 후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는 장치, 에너지효율이 종전보다 수배까지 높다.

'정부정책과 부합하는 패키지 사업추진'은 정부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다양한 에너지 지원을 조합한 패키지형 사업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슬 요소별 육성과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으로 ▲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단지 구축사업, ▲ 루프형 소형풍력발전기 개발사업, ▲ 무인항공기용 연료전지 개발, ▲ 선박용 친환경 추진 시스템 시험센터 구축, ▲ 미세조류 에너지 융·복합 사업,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그린빌리지 사업, ▲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 사업, ▲ 신재생에너지 생산거점 조성사업을 발굴했다.

이날 하승철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발굴된 사업을 정부 및 국책연구기관과 연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경남의 미래 50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풍력 및 연료전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풍력부품 실용화 개발사업, 해상풍력용 메인 샤프트 개발사업 등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경남의 우수한 조선·해양플랜산업과 해상풍력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연계하기 위한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 자료 : 도 미래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담당 (055)211-2783



경남도-KRRI와, 미래철도기술개발 미래성장동력 함께 만든다.

▶ 철도연 남부지소 유치 후 전국 최초, 3년간 9억원 지원하기로

경남도는 금년 처음으로 도내 철도 산업의 발전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철도관련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본 사업은 경남도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이 공동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국비 6억원, 도비 3억원 등 총 9억원이 투입된다.

3년 동안 중점 추진할 사업은 ▲ 애로기술 개발지원, ▲ 신기술·신제품 개발지원, ▲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3년간 9억원을 들여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2014년 2억원, 2015년 3억원, 2016년 4억원이 지원된다.

올해 중점 추진할 사업은 철도연의 보유기술력을 활용해 산업체 생산현장의 애로기술을 해소하고, 시제품 제작과 품질인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5월말 사업공모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하여 기술지원과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 동안 경남도는 지난해 4월 철도연구원 남부지소를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에 유치한데 이어, 도와 철도연구원을 중심으로 도내 철도 관련기업의 기술향상과 첨단부품 개발을 위해 여론수렴과 앞으로 추진하고 지원해야할 사업을 구상해 왔었다.

경남도가 미래성장동력의 하나로 미래철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철도가 친환경성, 안전성, 쾌적성과 함께 항공기를 넘보는 고속성까지 갖춰 21세기 교통 변화를 주도하고 세계철도시장 250조 규모로 차기 성장 동력사업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철도관련 기업체수는 328개 업체로 도내에는 2012년 기준, 현대로템(철도부품)과 두산엔진(내연 기관)등 모두 96개 업체가 있어 전국 1위(2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업원2,713명(35%) 연간 7,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경남도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은 철도산업 활성화에 따른 향후 '22년까지 ▲ 시장창출효과 2조 7,913억원, ▲ 수입대체효과 3,735억원, ▲ 고용 창출 36,354명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미래산업과 과학정책담당 (055)211-2753



2014년 경남 지역특화산업 지원계획 공고

▶ 총 151억 원 지원, 경남 지역특화산업 R&D·비R&D 사업 대상

지난 3월 31일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된 2014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지원계획이 공고됐다.

이번 공고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4개 시도(수도권 제외)별로 선정된 지역특화산업 분야의 신규 사업 지원계획을 통합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을 신청 받는다.

경남도의 지역특화산업은 생산기계, 수송기계전장, 나노광학, 소재성형, 생명건강 5개 분야로 총 151억 2천 2백만 원(국비 112.65억 원, 지방비 38.57억 원)이 지원되고 총 지원기간은 1년이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R&D(기술개발) 사업은 총 67.86억 원으로 연간 2억 원 이내 지원, 대상 산업은 생산기계, 수소기계전장, 소재성형 산업이다.

비R&D 사업은 국비 44.79억 원, 도비 38.57억 원이 투입되어 총 83.36억 원이 지원되며, 대상 산업은 생산기계, 수소기계전장, 소재성형, 나노광학, 생명건강 5개이며, 지원 유형은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3가지이다.

신청대상은 대상산업에 관련된 기업이나 지역혁신기관으로, 주관기관일 경우는 경남지역에 소재하여야 하나, 참여기관은 타지역 소재도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16일부터 6월 23일 까지 동남지역사업평가원 경남지역산업평가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설명회는 오는 5월 28일 경남테크노파크 1층 대강당에서 경남지역산업평가단 주관으로 개최해 사업 세부설명 및 홍보를 할 계획이다.

경남도 하태봉 성장동력과장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완제품 생산과정에서 기술력이

부족해 상품 고부가가치화가 어렵거나,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판로를 개척하지 못해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라며,

“우리 도의 핵심 전략 산업을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향후 사업이 추진되면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매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동남지역사업평가원, 경남도청, 경남테크노파크 등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 자료 : 도 성장동력과 지식기계담당
(055)211-2714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

- ▶ 융합·통합형 건설기술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로 개편
- ▶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관련 규제는 강화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5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건설기술진흥법령이 5월 2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21일 법제처 심사를 마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개략적으로 정한 건설기술용역업 및 건설기술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3천여 개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와 69만여 명의 건설기술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법률개정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의 전면적 개편 내용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규제는 완화되고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기술자 체계 및 교육

기존의 자격 중심 기술자 등급체계는 경력·학력 등 요소를 과소평가하여 건설기술자의 종합적인 기술력 평가에 미흡하고, 기술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경력·자격 및 학력 등을 종합하여 점수화한 역량지수*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초·중·고·특급)을 산정하도록 개선함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 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 :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 세부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할 예정
다만, 역량지수에 따른 등급 산정 결과 기존보다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기술자 등급을 인정하도록 함

현재 업무를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한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은 실무 투입전 교육으로서 실효성을 높이고 실무배치 후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받는 것으로 개선하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육시간은 3주에서 2주로 단축함

②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및 등록요건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를 종합, 설계·사업관리, 품질검사로 구분하고, 설계·사업관리 및 품질검사 분야는 세부분야를 둬. 특히,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종합엔지니어링

니어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포함)+품질검사 업무)” 및 “일반설계·사업관리(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포함) 업무)” 업역을 신설

* 지금까지는 종합엔지니어링 수행을 위해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감리, 품질검사 등을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신고·등록해야 했음

건설기술용역업 진입요건을 낮춰 업체간 경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과도한 등록요건을 완화함

* (현행) 종합감리업 등록: 기술자 25명, 자본금 5억 → (개정) 감리가 건설사업관리로 통합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으로 등록: 기술자 10명, 자본금 1억 5천만 원

※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전문분야		업무범위
종합	종합	설계등용역 + 건설사업관리 + 품질검사
설계·사업관리	일반	설계등용역 + 건설사업관리
	설계등용역	계획·조사·설계 등 포괄적 설계등 용역업무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감리포함)
품질검사	일반/토목/건축/특수	품질시험·검사

③ 안전관련 규제 강화

인명피해 발생 등의 경우에 설계업자·건설사업관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하고, 안전관련 의무 위반의 경우는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함

지금까지 민자사업자, 발전사업자 등 민간성격의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았으나,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도록 함

발주청이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건설업자가 착공 전에 작성)을 심사하는 경우, 시설안전 전문 공기업인 시설안전공단에 의무적으로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여 심사를 내실화 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시설물) 특수교, 경간장 50m 이상 교량, 연장 100m 이상 교량, 고속·도시철도 교량·터널, 국도터널, 500m 이상 지방도터널, 100m 이상 지하차도, 1백만 톤 이상 댐, 16층·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1년 이상 공사중단 후 공사재개 전 의무적 안전점검을 실시 대상이 현재는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공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일반 시설물 공사도 포함하도록 개선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이상 건축물,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공사, 발주자가 점검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사 등

시행규칙은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건설기술자 신고, 건설기술용역업 하도급 승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은 시·도지사가 관할하게 되며 시·도지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법정 건설기술용역업자 단체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에 등록관련 업무를 위탁하면 동 협회를 통해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건설기술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은 5월 23일 중으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시행은 기존의 칸막이식 업역체계 및 관리

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보다 근접한 융합·통합형 업역 및 기술자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5
기술기준과 (044)201-3566
건설안전과 (044)201-3574



삼성물산·금호산업·금성백조주택, 원-하도급 상호협력 돋보여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2,664개 우수업체에 1년간 인센티브

국토교통부는 “2014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 결과, 2,664개 건설사를 우수업체(60점 이상)로 선정하고 5월 31일 발표하였다.

우수업체 중 최상위 점수(95점 이상)는 대기업 11개사, 중소기업 136개사로서, 이중에서 대기업은 삼성물산(주)와 금호산업(주)이, 중소기업은 금성백조주택(주)이 최고점을 받았다.

우수업체는 5월 3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지자체 적격심사와 시공능력 평가 시 우대를 받게 된다.

※ 가산점 내용

상호협력평가 결과	가산점			가 산 시공능력 평가액
	PQ		지자체 적격심사	
	조달청	지자체		
95점이상	3.0	2.0	3.0	최근3년간 공사실적평 균액 6%
90점이상	2.0			
80점이상 90점 미만	1.5	1.5	2.2	5%
70점이상 80점 미만	1.0	1.0	1.4	4%
60점이상 70점 미만	0.5	0.5	0.5	3%

이같은 혜택을 받을 업체는 전체 종합건설업체의 24.3%에 해당된다. (전체 종합건설업체는 10,945개사, '14. 5월말기준)

올해의 경우 2,664개 건설업체가 60점 이상을 받아 '13년 상호협력 평가 우수업체 선정 결과(2,600개사)보다 2.4%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업들이 원·하도급 상생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간, 대·중소기업간의 상호협력 및 공생발전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98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제정하고 매년 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평가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로 구성되며, 대기업(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1등급업체 53개사)과 중소기업별로 나누어 평가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중소 종합건설업체와의 협력실적도 평가하는 등 중소기업과 구별되는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상호협력 우수업체를 발굴하여 건설업계의 상생협력과 공생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년 건설업체 상호협력평가 결과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내의 국민마당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2-397호, '12.7.5)

평가분야 구분	계	공동도급 실적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대 기업	100점	10점	20점	60점	10점
중소기업	100점	-	25점	55점	20점

■ 자료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52

건설산업 비정상적 관행 개선 속도 높인다

▶ 상습체불업체 공개,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 11월부터 시행

공사대금 상습체불 등 그 동안 건설산업에서 관행처럼 행해지던 비정상적 불공정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표,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5.14(수) 공포되어 금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할 경우 그 업체의 명단이 공표된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중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그 결과를 건설업자의 실적, 재무상태 등을 나타내는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는 등 해당 업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부실업체의 고의적인 부도 및 잠적으로 인한 체불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하도급업체 등이 상습체불업체와의 계약을 기피하게 되어 대금 체불이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지금은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만 공개가 되고 하도급 계약 정보는 계약 당사

자들끼리만 공유됨에 따라 원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저가계약, 이중계약 등을 하도급자에게 강요하는 것을 막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공공사의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하도급금액 및 하도급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됨으로써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원도급공사의 하자기간만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하도급공사의 하자책임은 원·하도급 계약에 의존했기 때문에, 원·하도급 계약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원도급자보다 긴 하자기간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종종 발생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하자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사례가 개선될 전망이다.

공공공사에서 저가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저가 낙찰공사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높으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이 저가 낙찰공사*까지 확대됨에 따라 하도급대금 체불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경우 하도급업체에게도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시 발주자와 원도급업체에게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있어,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를 속일 경우 하도급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보증서 발급 여부를 모르거나 원도급업체가 기 발급한 보증서를 중도에 해지한 사실을 몰라서 발생하는 불상사는 사라질 전망이다.

그 밖에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서 점검 의무화, 반복적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시 발주자 직불 의무화 등도 이번에 같이 개선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작년부터 지속 추진중인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한 시장 문화가 정착되고 대·중소 기업의 공생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497



효과 검증된 회전교차로, 내년부터 일반국도로 확대

- ▶ 교통사고 44%·통행시간 30% 줄여...
회전차량 우선권 준수 필요



국토교통부는 교통 소통과 안전, 환경 개선 측면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회전교차로(Roundabout)를 내년부터 일반국도 등에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회전교차로는 지난 2010년부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및 녹색 교통 활성화 방안으로 도입되었으며, 교통지체 및 교통사고 잦은 지점, 환경오염 유발지점 등을 대상으로 전국 지방지역 364개소에 설치·운영 중이다.

운영 결과 회전교차로의 독특한 기하구조와 운영방식에 의해 교통소통/안전/환경 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사고 발생 건수 평균 44% ↓, 통행시간 평균 30.4% ↓(한국교통연구원)

이에 따라 일반국도에도 올 상반기부터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한 도로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2015년부터는 1일 교통량 15,000대 미만인 구간을 대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설치·운영 중인 회전교차로를 대상으로 교통운영·안전성 등 개선점을 파악하여 현 회전교차로 설계기준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성공적인 회전교차로 확대 보급 및 운영을 위해 ‘회전차로 내 주행차량에 우선권이 있는 통행요령’의 개선효과를 홍보하고 경찰청과 협의

를 통해 운전면허 필기시험 과목에도 반영하는 등 대국민 인식 전환에도 적극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회전교차로는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교차로로 가장 쉽게 실행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 중 하나이지만, 로터리와 같은 실패를 또 다시 겪지 않으려면 교통법규 준수가 잘 지켜져야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 안내표지에 따라 속도를 줄여야 하며, 회전차량에 우선권이 있다는 약속된 규칙을 운전자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회전교차로가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044)201-3888



물 부족 섬마을, 지하수 확보 가능해진다

▶ 국토부, 영광군 안마도·웅진군 대이작도에 실시설계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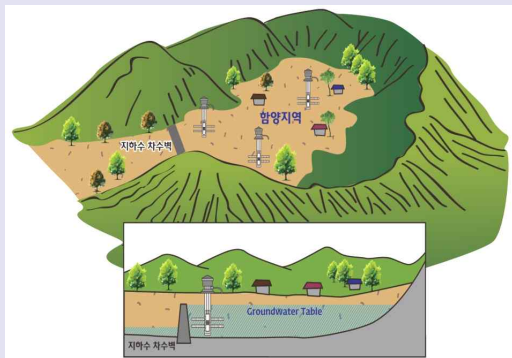
국토교통부는 상습적인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섬지역에 안정적이고 깨끗한 용수공급을 위해 시범적으로 전남 영광군 안마도와 인천 웅진군 대이작도에 지하수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도서지역 물 부족 해결을 위해 지하수 확보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12.1월, 지하수법 개정)하고, 도서·해안지역 지하수 확보방안에 대한 정밀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진행('11.5월 ~ '13.12월)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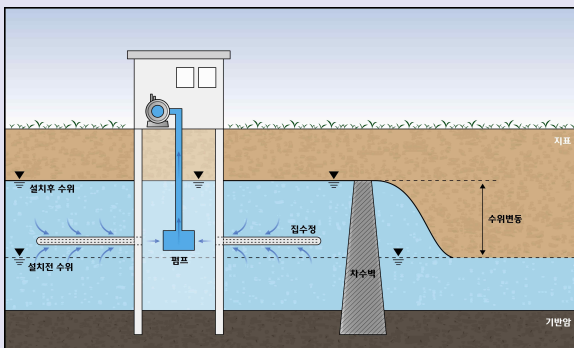
타당성조사 결과 우선순위가 높은 안마도와 대이작도 2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이달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한다.

지하수 확보시설은 지하수가 흐르는 땅속에 물막이벽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저장하고 바닷물 침입을 방지함으로써 연중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여 가뭄대처에 용이한 용수확보 시설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 용수 공급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신규 지하수 확보시설을 지자체에 공급함으로써 도서지역 물 부족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도서지역시설 모식도>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모식도>

■ 자료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 (044)201-35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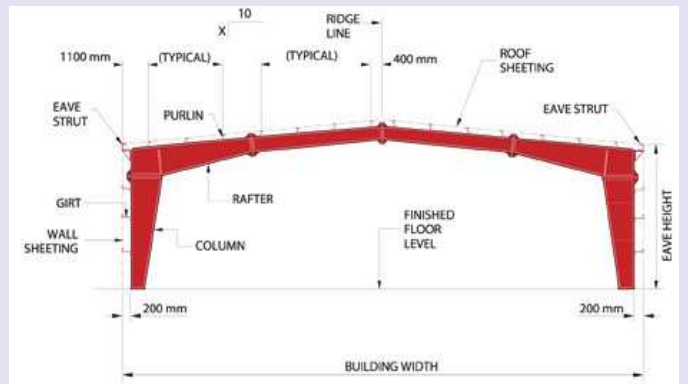


국토부, 전국 PEB구조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 전문가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폭풍·폭설에 대비

지난 2월17일 발생한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PEB (Pre-Engineered Building)* 구조 건축물에 대한 전국적인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 휨모멘트 크기에 따라 부재형상을 최적화한 변 단면부재를 사용한 철골구조물



PEB 건축물의 단면(예시)

국토교통부는 사고 이후 전국 PEB 건축물에 대한 전수현황조사 및 샘플점검*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전국 2천여동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착수한다.

* 국토부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서 건축물 도면확인, 업체 제출자료 등을 통해 PEB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된 시설 중 다중이용시설 (체육관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과 기동간격이 넓은 대규모 시설 중 78동(시도별 5동)을 표본 추출하여 점검 실시('14.3 ~ 4)

이번 점검은 지자체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며, 현장 안전점검과 함께 현재 국토부가 마련 중인 폭풍·폭설에 대비한 평상시 유지관리요령도 건축주(관리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샘플점검 실시 결과, 일부 건축물에서 접합부 상태 및 횡하중을 견디기 위한 보강재 설치 미흡 등으로 추가 정밀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향후 발생 가능한 재해에 대비하여 건축주가 PEB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5월까지 유지관리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금번 PEB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국토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가와 합동으로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부재의 변형 및 부식 상태, 지붕마감재 변형, 접합부 상태”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또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추가 정밀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직접 점검을 지원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동절기 전에 조치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샘플점검 결과 정밀점검이 필요한 다중이용시설 (12동)에 대하여는 즉시 시행

한편, 국토부는 일부 건축물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점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가 직접 해당 시·군·구청 건축부서에 ‘전문가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PEB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전점검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며, PEB 건축물을 소유한 업체 및 건축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70



종합심사낙찰제, 최초 시범사업 발주

▶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14.6.2,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종합심사낙찰제*의 첫 시범사업을 입찰 공고하였다.

첫 시범사업 대상은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럭 아파트 건설공사」로 약 590억원(430세대) 규모의 사업이다.

* 정부가 발주기관, 업계, 전문가와 함께 현행 최저낙찰제의 대안으로 마련한 제도로써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제도

그간 정부는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LH,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 2개월의 실무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등을 담은 「LH 종합심사낙찰제 특례운용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동 운용기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은 공사수행능력(45점), 가격(55점), 사회적책임(가점), 계약신뢰도(감점)로 구성되어 있다.

① 「공사수행능력」 항목의 경우 “공사품질 확보”를 중점 평가한다.

- 해당업체가 기존에 수행한 공사의 품질을 나타내는 “시공평가결과” 점수비중을 1/3만큼 반영하여 시공자가 고품질의 공공시설물을 시공토록 유도하였다.

② 「가격」 항목의 경우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평균적인 시장가격을 써낸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하였다.

-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나, 평균 입찰가격의 97% 미만일 경우 기본점수만 부여하며, 최저낙찰제와 달리 모든 세부공종의

가격을 평가하여 기준보다 가격이 낮은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가격점수를 감점한다.

③ 「사회적 책임」 항목은 건설안전(과거 건설 현장 재해 발생 비율), 건설인력 고용(고용탄력성, 임금체불 횟수), 공정거래(하도급업체와 상호협력 정도,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횟수) 등을 평가한다.

④ 「계약신뢰도」는 입찰시 제출한 핵심기술자 배치계획, 하도급 이행계획 등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향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발주에서는 건설안전 확보와 최근 입주민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층간 소음문제 해소를 위해 「가격」 평가에 있어 건설안전 및 층간 소음과 관련한 세부 공종에 대하여는 타 세부공종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수행능력」 항목 중 시공 평가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 배치기술자평가 항목의 만점 기준을 경력7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사회적 책임」 항목 중 건설안전 분야의 평가비중을 강화(「사회적 책임」 항목 배점의 40%)한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시범사업의 시행이 “높은 품질의 시설물을 시장에서 인정하는 적정한 가격으로 건설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새롭게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시범사업 결과는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예정된 후속 시범사업 결과와 함께 제도화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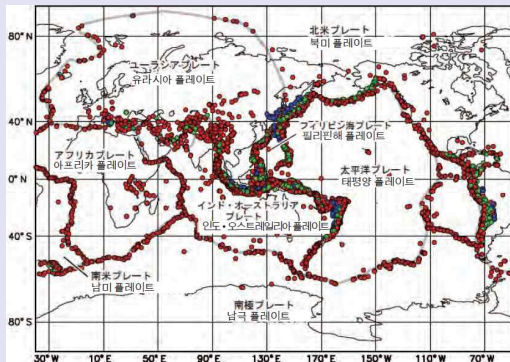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504

I. 국토와 재해

1. 재해 피해를 입기 쉬운 국토

일본은, 지진 및 화산활동이 활발한 환태평양 변동대에 위치하며, 전 세계의 불과 0.25% 밖에 안되는 좁은 국토면적에 비하여 지진 발생 횟수와 활화산 분포수는 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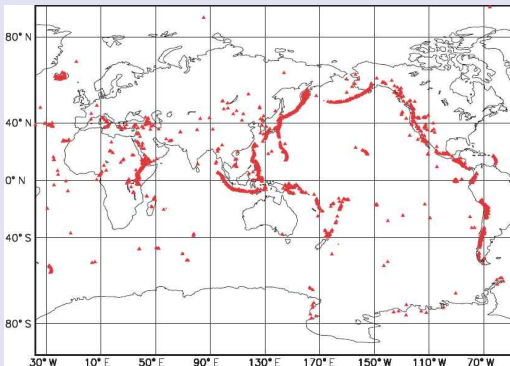
또한, 지리적, 지형적, 기상적인 제반조건으로 말미암아, 태풍, 집중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국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례
(2000~2009년, 매그니튜드 5.0 이상)



자료 : 미국 지질조사소(USGS)의 진원 데이터를 기초로 기상청에서 작성.



화산은 과거 약 1 만년 사이에 활동한 기록

자료 : 미국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의 화산 데이터를 기초로 기상청에서 작성

세계의 재해와 일본의 재해 비교(지진 발생 횟수, 활화산 수)



주) 2000년부터 2009년 사이의 합계
자료 : 일본에 관해서는 일본 기상청. 세계에 관해서는 미국지질조사소(USGS)의 진원 자료를 기초로 내각부에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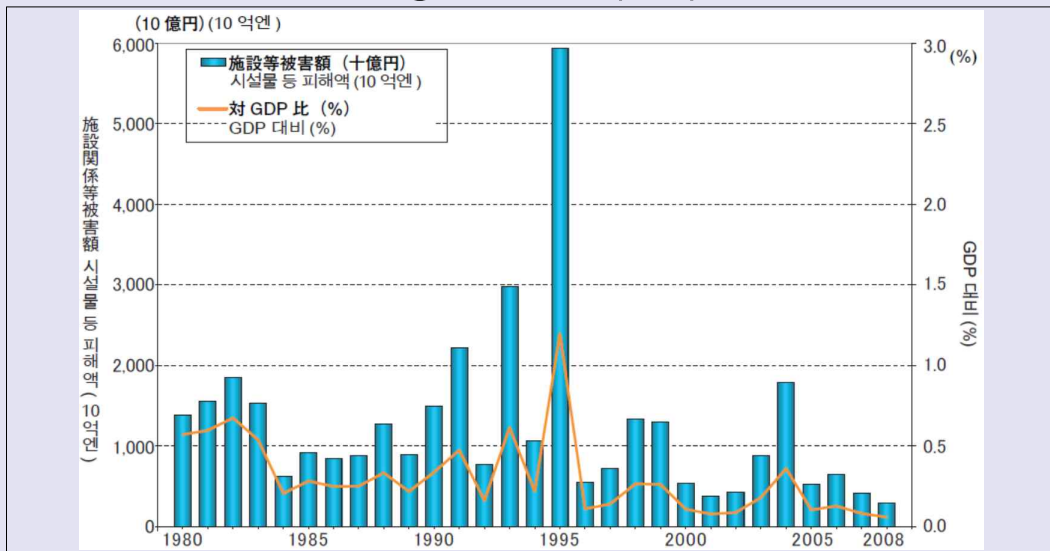
주) 활화산은 과거 약 1만년 사이에 분화한 화산 등
자료 : 일본에 관해서는 일본 기상청. 세계에 관해서는 미국의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의 화산 자료를 기초로 내각부에서 작성

2. 재해의 상황

일본에서는 해마다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쇼와 30년대 (1955년 ~1964년) 전반까지만 해도 대형 태풍이나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수천명에 이르는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했지만, 방재체제의 정비·강화, 국토보전 추진, 기상정보 발전, 재해정보 전달수단 충실화 등을 통한 재해 대처능력 향상 및 재해 취약성 보완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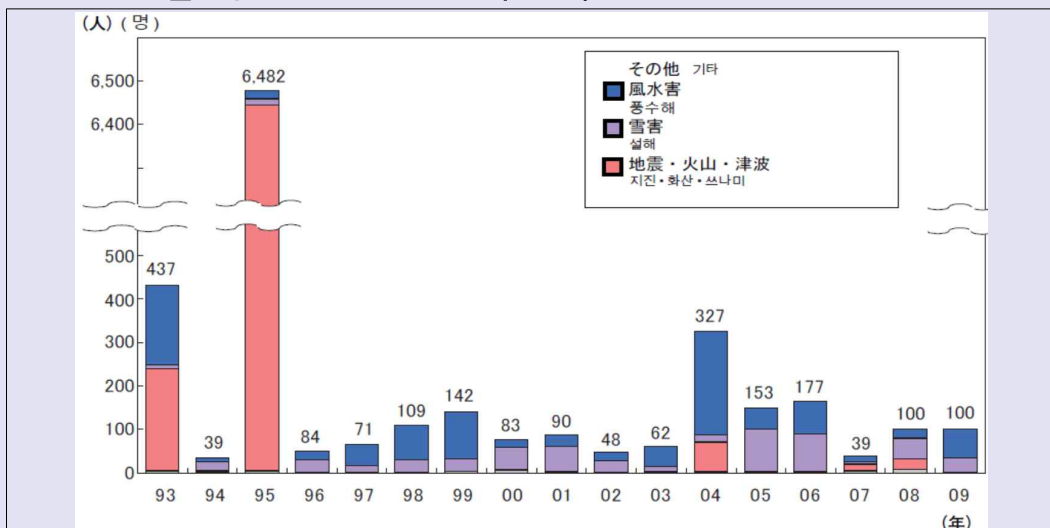
그렇지만, 1995년에는 한신·아와지 대지진으로 6,400명을 넘는 인명피해가 났으며, 2009년에도 풍수해·설해 등으로 100명에 이르는 사망자·행방불명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지진의 절박성이 지적되고 있어, 자연재해는 국가의 안전·안심과 관련된 커다란 위협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 등 관련 피해액의 추이



자료 : 시설물 등 관련 피해액은 각 부처의 조사를 기초로 내각부에서 정리. 국민총생산은 「국민경제 계산 연보」에 의함.

재해 원인별 사망자·행방불명자 수의 추이



자료 : 소방청의 자료를 기초로 내각부에서 작성. 지진은 쓰나미로 인한 것도 포함함

II. 방재법 제도·체재의 경위

일본에서는 대규모 자연재해나 사고의 경험을 계기로 하여 방재체제가 강화·총실화 되고 있으며, 현재는 재해대책기본법 및 각종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재해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기가 된 재해	재해대책과 관련된 주요 법제도	방재계획·체제 등
1940년 45· 마쿠라자키 태풍 46· 난카이 지진 47· 캐슬린 태풍 48· 후쿠이 지진	47· 재해구조법 49· 수방법	
1950년 59· 이세완 태풍	50· 건축기준법	
1960년 61· 대설 64· 니가타 지진	60· 치산치수 긴급조치법 61· 재해대책기본법 62· 극심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재정원조 등에 관한 법안 · 대설지대대책 특별조치법 66· 지진보험에 관한 법률	61 방재의 날 창설 62 중앙방재회의 설치 63 방재기본계획
1970년 73· 사쿠라지마 섬 분화 · 아사마산 분화 76· 도카이 지진 발생 가능성 연구발표 (지진학회) 78· 미야기현 앞바다 지진	73· 활동화산 주변영역에 있어서의 피난시설 등에 관한 법률 (→1978년, 활동 화산대책 특별조치법) 78· 대규모지진대책 특별조치법	79 (도카이 지진) 지진방재계획
1980년	80· 지진방재대책 강화지역에 있어서의 지진대책 긴급경비사업과 관련된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81· 건축기준법 일부 개정	83 방재주간 창설
1990년 95· 효고현 남부 지진 (한신·아와지 대지진) 99· 히로시마 집중호우 · JCO 일계사고	95· 지진방재대책 특별조치법 · 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 · 재해대책기본법 일부 개정 · 대규모지진대책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96· 특정비상재해피해자의 권리이익 보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97· 밀집시가지에 있어서의 방재지구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98· 이재민 생활재건 지원법 99· 원자력재해대책 특별조치법	95 방재기본계획 전면 수정 방재와 자원봉사의 날 등 창설
2000년 00· 도카이 집중호우 04· 니가타·후쿠시마 집중호우 등 05· 니가타현 추에쓰 지진	00· 토사재해경계구역 등에 있어서의 토사재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01· 수방법 일부 개정 02· 도난카이·난카이 지진과 관련된 지진방재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03· 특정도시 하천침수피해 대책법 04· 일본해구·치시마해구 주변 해구형 지진과 관련된 지진방재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05· 수방법 일부 개정 · 토사재해경계구역 등에 있어서의 토사재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06· 렉지조성 등 규정법 일부 개정	01 내각부 설치 03 도카이 지진 대책 대강 도난카이·난카이 지진대책 대강 도카이 지진 방재대책 추진 기본계획 04 도난카이·난카이 지진 방재대책 추진 기본계획 05 도카이 지진 방재추진 전략 도난카이·난카이 지진 지진방재전략 수도 적하지진 대책 대강 06 일본해구·치시마해구 주변 해구형 지진대책 대강 일본해구·치시마해구 주변 해구형 지진 방재대책 추진 기본계획 수도 적하지진의 지진 방재전략 재해피해를 경감하는 국민운동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 08 일본해구·치시마해구 주변 해구형 지진의 지진 방재전략 09 중부권·긴키권 적하지진 대책 대강

III. 방재 체제

1. 종합적 방재체제 확립 - 재해대책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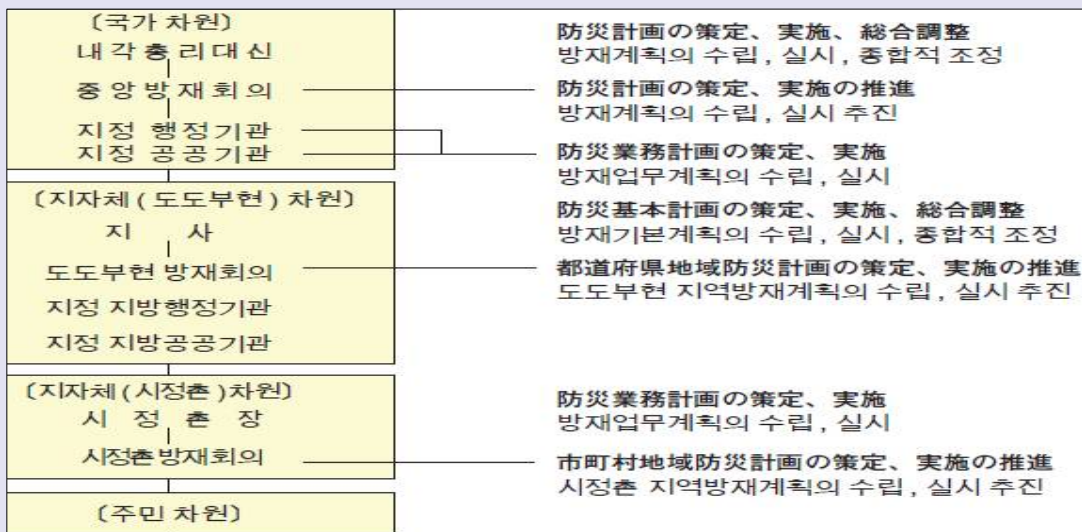
자연재해로부터 국토 및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가장 중요 과제입니다.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1959년의 이세완 태풍을 계기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방재체제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1961년에 재해 대책 기본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산·아와지 대지진 등 대규모 재해의 교훈을 바탕으로 방재체제를 강화·충실화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재체제에 있어서는, 예방, 응급, 복구·부흥 등 재해의 모든 국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공공단체 등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관과 민의 관련 주체가 연계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재해대책기본법의 주요 내용

- ① 방재 책임 명확화
- ② 방재에 관한 조직
- ③ 방재 계획
- ④ 재해 예방
- ⑤ 재해 응급 대책
- ⑥ 재해 복구
- ⑦ 재정 금융 조치
- ⑧ 재해 긴급 사태

방재 조직



지정 행정기관 : 중앙정부의 24개 행정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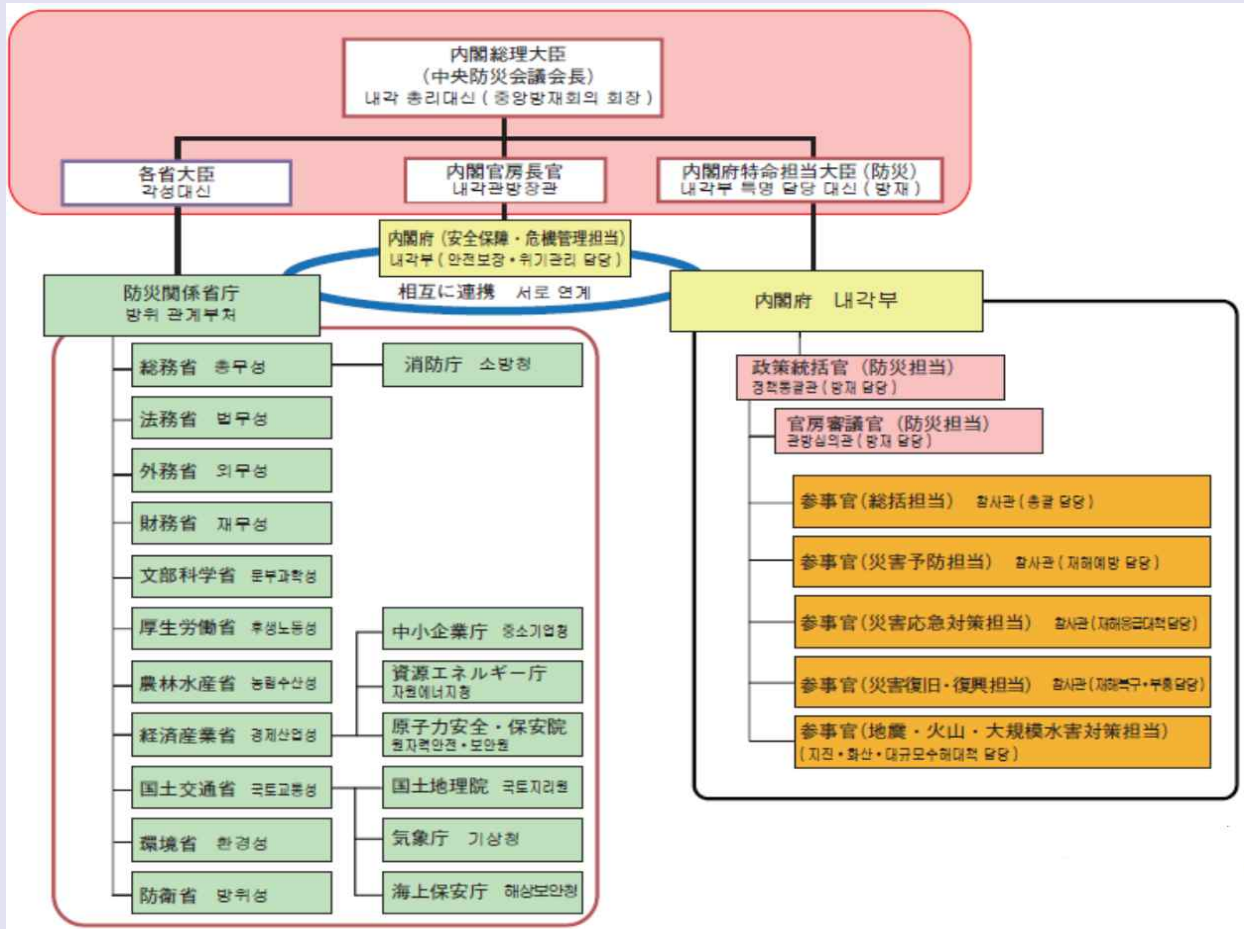
지정 공공기관 : 일부 독립행정법인, 일본은행, 일본적십자사, NHK 등 공공적 기관과 전력사, 가스사, NTT 등 공익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63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 내각부의 역할

2001년의 중앙 부처개편에 따라, 방재에 관하여 행정부처의 시책 통일화를 꾀하는 특명 담당대신으로서 방재담당대신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범정부적 차원으로 관련 행정기구의 연계 확보를 꾀하는 내각부에서, 정책통괄관(방재담당) 이 방재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 대규모 재해 발생시의 대처에 관한 기획 수립 및 종합적 조정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한산·아와지 대지진의 교훈을 바탕으로 대규모 재해, 중대사고 등 긴급사태에 있어서의 정부의 위기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각 위기관리감 설치와 내각 정보집약 센터 창설 등 내각 관방의 체제 강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방재에 관하여 내각부는 내각관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및 내각부(방재) 조직도



3. 중앙방재회의

중앙 방재회의는, 내각의 중요 정책에 관한 회의의 하나이며, 재해대책기본법에 의거하여 내각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내각총리대신을 회장으로 모든 국무대신, 주요 공공기관의 대표 및 유식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각총리대신이나 방재담당 대신의 자문을 받고 방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등 종합적 재해대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4. 방재계획

중앙 방재회의는, 내각의 중요 정책에 관한 회의의 하나이며, 재해대책기본법에 의거하여 내각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 방재계획 체계

- 방재 기본계획 : 일본의 재해대책의 근간을 이루는 방재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며, 재해대책기본법에 의거하여 중앙방재회의가 작성하는 계획
- 방재 업무계획 : 방재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지정된 행정기구 및 지정된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계획
- 지역 방재계획 : 방재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지자체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방재회의가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작성하는 방재계획

(2) 방재기본계획

방재 기본계획은, 방재체제 확립, 방재 사업 촉진, 재해복구의 신속·적절화, 방재에 관한 과학기술 연구 추진 등 방재에 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교훈을 바탕으로 1995년에 전면 수정되고, 중앙정부, 지방공공단체, 공공기관 등이 수행하는 시책에 대해, 각각의 책무를 명확히 정함과 아울러 재해의 종류별로 예방, 응급, 복구·부흥 등 각 단계별로 강구해야 할 대책을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저술되어 있습니다.

5. 방재관련 예산

국가의 방재 관련 예산은 총 약1조 2,383억엔 (2010년도)으로, 분야별로 보면,

- ① 과학기술 연구 0.6%,
- ② 재해 예방 17.5%,
- ③ 국토 보전 62.4%,
- ④ 재해복구 등 19.5% 로 되어 있습니다.

방재관련 예산 내역의 추이



다음호에 계속...

■ 자료 : 지방건설기술심의회 김 대 유
(주)덕성 부회장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 입법예고일 : 2014. 5. 1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646호)
- 예고기간 : 2014. 5. 14. ~ 2014. 6. 29.

□ 개정이유

주차장법 개정으로, 시설물과 인근 부설주차장의 관계를 부기등기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시행령 개정을 추진

□ 주요내용

가. 부기등기 신청방법(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 인근부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부기등기는 시설물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부기등기 내용(안 제19조제3항 및 4항)

- 시설물의 등기기록에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 또는 건물의 지번·건물번호, 인근에 별도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있음을 기록
-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본 시설물의 지번·건물번호,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내용 기록

다. 등기소 관할 및 등기관 의무(안 시행령제19조제5항 및 제6항)

- 시설물과 인근 부설주차장의 등기소 관할이 다른 경우에 등기관의 조치사항을 규정

라. 부기등기 말소방법(안 시행령제19조제7항 및 제8항)

- 부설주차장 대한 부기등기 말소신청은 부설주차장 소유자가 신청
- 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 말소는 등기관 직권으로 이행

□ 의견제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로 2014년 6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044-201-80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입법예고일 : 2014. 5. 22.(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660호)

□ 예고기간 : 2014. 5. 22. ~ 2014. 7. 1.

□ 개정이유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서 휴업기간 확대, 주거용 건축물 최저보상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영세 상인 및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등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매출손실액 등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안 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7항 신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 중 발생하는 영업이익 외에도 영업장소 이전 후 매출손실 등이 발생하나 이에 대한 보상이 없으므로 이를 추가

나. 휴업보상기간 확대(안 제37조제2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에 대해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에서는 4개월 이내로 하고 있어 동일한 영업형태에 대해 사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4개월 이내로 확대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함

다. 주거용 건축물 특례 보상 하한액 상향 조정(안 제58조제1항)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금액이 5백만 미만인 경우 5백만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07년 4월 개정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상실하게 되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의견제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1호 토지정책과

(전화 044-201-3401, fax 044-201-5534)

■ 자료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입법예고일 : 2014. 5. 15.(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628호)
- 예고기간 : 2014. 5. 15. ~ 2014. 6. 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입주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하여 입주자와 별도 계약·공급할 수 있는 추가선택품목에 현행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박이 가구 및 불박이 가전제품 등 4가지 외에 기술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른 품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고시하는 품목을 추가하고,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박이 가구 및 불박이 가전제품의 세부 품목을 동규칙으로 상향 규정하며, 제한·한정 등 지나치게 규제적인 용어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의견제출

이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로 2014년 6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전화 : 044-201-3320, 3332 팩스 044-201-5529)

■ 자료 : 국토교통부

자연녹지지역 지정 전에 설립·등록하여 운영하다가 자연녹지지역 지정 후에 증설했던 공장인 경우에 완화된 건폐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6호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함)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완화하여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부지에서 공장을 설립·등록하여 운영하던 중에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고, 그 이후에 기존 공장과 접한 토지를 공장부지로 확장하고 기존부지 안에 별도의 공장건축물을 증설한 경우로서, 위 기존부지에 있는 증설 전의 기존 공장을 증축하려는 경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회 답

기존부지에 있는 증설 전의 기존 공장을 증축하려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 유

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건폐율을 완화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서는 “공장의 설립”을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22호에서는 “공장의 증설”을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사안과 같이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후에 공장을 증설한 경우에는 기존의 공장과 증설한 공장을 합해서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공장증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제처 2013. 8. 7. 회신 13-0246 해석례 참조).

만약,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후에 공장을 증설한 경우에도 자연녹지지역 지정 당시 이미 준공된 공장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건폐율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용도지역별로 허용하고 있는 건폐율을 초과하는 예외적인 대지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도지역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자료 : 법제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하기로 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어 2000. 3. 1. 시행된 것)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공공청사 부지로서, 주택건설사업승인 후 10년 이상 공공청사가 건축되지 않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를 하였으나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해당 토지에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 회 답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 유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금지하는 같은 법 제64조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어 2000. 3.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공공청사 부지로서, 주택건설사업승인 후 10년 이상 공공청사가 건축되지 않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를 하였으나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해당 토지에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이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양자를 별도로 둔 취지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일률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는바, 도시·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를 단위로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이고, 지구단위계획은 소규모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인 규제를 하기 위한 계획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의 대상 지역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각각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64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 자료 : 법제처

전단돌기가 있는 띠형 유공강판 연결재를 사용한 강관말뚝 머리보강공법(Crown Cap 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지승건설턴트
	현대엔지니어링(주)
	(주)케이알산업
	대우조선해양건설(주)
	(주)수성엔지니어링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30호
- 기술분류 : 토목/터토질기초/말뚝
토목/ 교량/ 기타 교량시설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강관말뚝기초에서 강관 말뚝으로 확대기초 콘크리트구조물을 지지하는 경우 사용되는 강관말뚝 머리보강공법으로, 시공된 강관말뚝의 상단을 정리한 후 말뚝 머리부에 천공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구멍을 내어 관통철근을 교차 배치하고, 말뚝 내부에 속채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판을 설치한 후, 전단돌기(shear key)가 있는 띠형 유공강판 연결재(Perforated Plate)를 강관말뚝의 절단면에 고정걸쇠로 수직하게 방사형 배치하고, 띠철근(원형링)으로 결합함으로써 강관말뚝과 확대기초 간의 강결합을 확보하는 강관말뚝 머리보강공법(Crown Cap 공법)이다.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시공된 강관말뚝의 상단을 정리한 후 말뚝 머리부에 천공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구멍을 내어 관통철근을 교차 배치하고, 말뚝 내부에 속채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판을 설치한 후, 전단돌기가 있는 띠형 유공강판 연결재를 강관말뚝의 절단면에 고정걸쇠로 수직하게 방사형 배치하고, 띠철근(원형링)으로 결합함으로써 강관말뚝과 확대기초 간의 강결합을 확보하는 강관말뚝 머리보강공법



Crown Cap 공법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https://www.kaia.re.kr/>)건설신기술정보마당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 현황

2014년 제6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

- 건 명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 3건
- 심의일자 : 2014. 5. 9.(금)

의안 번호	안 건 명	발주청	심의결과
2014-06-01	고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남해군 (건설교통과)	조건부
2014-06-02	대장경 기록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합천군 (대장경테마파크 관리사업소)	조건부
2014-06-03	합천군 상수도 관망도 작성 및 누수탐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합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조건부

2014년 제7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

- 건 명 : 실시설계 적정성1건,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 4건
- 심의일자 : 2014. 5. 21.(수)

의안 번호	요청사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발주청	심의결과
2014-07-01	실시설계 (적정성)	사천 종포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사천시 용현면 신촌리 432-24 일원 · 사업내용 : A=377,160㎡ · 사 업 비 : 630억원(공사비 324, 기타 306) · 사업기간 : 2014 ~ 2016년	사천시 (도시과)	조건부

의안 번호	안 건 명	발주청	심의결과
2014-07-02	거창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거창군 (도시건축과)	조건부
2014-07-03	합천군 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합천군 (도시건축디자인과)	조건부
2014-07-04	진주시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진주시 (녹지공원과)	조건부
2014-07-05	창원시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창원시 (정보통신담당관)	조건부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담당
(055)211-4625

계약심사 현황

(단위:백만원)

기 간	분 야	건수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2014년 5월	계	76	95,386	88,558	6,828	7.16%	
	공사	토목	29	60,150	55,811	4,339	7.21%
		건축	9	10,384	9,649	735	7.07%
		기타	9	13,153	12,167	986	7.50%
	용역	12	9,847	9,152	695	7.06%	
	물품	17	1,852	1,779	73	3.94%	

■ 자료 : 도 회계과 계약심사담당
(055)211-3548

기술인 나눔 정보

하도급지킴이 교육 실시

- 일 시 : 2014. 6. 27.(금) 14:00
- 장 소 : 경남도청 본관 4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도·시·군 사업부서 공사감독관 및 회계(계약) 담당, 경남교육청, 소방서, 금융기관, 기업체(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등
- 교육내용 : 하도급지킴이 활용방법 등

■ 자료 : 도 회계과 계약담당
(055)211-3523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snd.net>(실국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i.gsnd.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재 신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4623~6

FAX : (055)211-4619

e-mail : babyhye@korea.kr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